

의안번호	제 760 호
의 결 연 월 일	2021년 6월 일 (제 391 회)

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
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제 안 자	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장
제안연월일	2021년 6월 23일

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의안 번호	760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1. 6. 23.

제안자 :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
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장

1. 주문

-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2년 5월 31일까지 11개월 연장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호축 개발의 중심으로 2019년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중이나,
- 충주 삼탄~제천 연박 구간, 충주 달천대교 구간 선형개량, 교통대앞 광산건널목 사업 등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이 필요함.
- 또한 세종시 관문역인 KTX오송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을 지속추진하여 KTX세종역·ITX세종역 설치 저지를 위한 제반활동도 지속적으로 필요함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
관계법령 발췌

□ 특별위원회 구성

[지방자치법]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[지방자치법 시행령]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[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]

제35조(특별위원회)① 의회는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□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

[지방자치법 시행령]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